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2883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71호	주호영의원	2024. 6. 21.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 7.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8558호	김준혁의원	2025. 2. 27.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6. 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22.)는 이상 2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 8. 27.)는 이상 2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 (생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